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3년 7월 30일

나. 회부일자 : 1993년 7월 30일

3. 제안이유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1조에 의거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등록 재산의 심사와 결과 처리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 위원회의 구성 (안 제2조)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9명
-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 4명의 위원은 도 의회의원 2명, 도 소속 공무원 2명

◦ 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

-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 처리등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등 (안 제4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 (1차 연임 가능)
- 위 2년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은 재임기간, 소속 공무원은 재직중인 기간
- 결원의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

## 5. 검토의견

충청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된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되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 하고, 4명의 위원은 도의회 의원 2명과 도 소속 공무원 2명으로 하여 구성함과

둘째,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그 기능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하도록 하고

셋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등에 있어서 그 임기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2년으로 하되 의회의원은 재임기간만을, 소속 공무원은 재직중인 기간으로 규정하는등 그 외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간사, 수당, 위원회 운영규정등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원활한 재산등록제의 실현을 위하여 본 제정 조례안을 승인하여 좀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6. 첨부

· 충청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公職者倫理法〔1981. 12. 31 法律第3520號〕

改正 1987. 12. 4 法律第3993號(軍事法院法)  
1988. 8. 5 法律第4017號(憲法裁判所法)  
1991. 11. 30 法律第4408號(憲法裁判所法)  
1993. 6. 11 法律第4566號

###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公職者 및 公職候補者の 財產登錄과 登錄財產公開制度를 制度화하고, 公職을 이용한 財產取得의 規制·公職者의 賠物申告·退職公職者의 就業制限등을 規定함으로써 公職者의 부정한 財產增殖을 방지하고, 公務執行의 公正성을 확보하여 國民에 대한 奉仕者로서의 公職者의 倫理를 확립하는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93.6.11)

**第2條 (生活保障等)** 國家는 公職者가 公職에 獻身할 수 있도록 公職者의 生活을 보장하고, 公職倫理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 第2章 財產登錄 및 公開

**第3條 (登錄義務者)**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公職者(이하 “登錄義務者”라 한다)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產을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3.6.11)

1. 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國會議員등 國家의 政務職公務員
2.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地方議會議員
3. 4級이상의 一般職인 國家 및 地方公務員과 이에 상당하는 職位를 占는 別定職公務員
4. 4級이상의 外務公務員 및 國家安全企劃部의 職員
5. 法官 및 檢事
6. 大領이상의 將校 및 이에 상당하는 軍務員
7. 教育公務員 중 總長·副總長·大學院長·學長(大學校의 學長을 포함한다) 및 專門大學長과 大學에 준하는 각종學校의 長, 서울特別市·直轄市·道의 教育監·教育長 및 教育委員
8. 總警이상의 警察公務員과 消防正 및 地方消防正이상의 消防公務員

9. 政府投資機關의 長·副機關長 및 常任監事, 韓國銀行의 總裁·副總裁 및 監事, 銀行監督院長, 農業協同組合中央會·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畜產業協同組合中央會의 會長 및 常任監事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機關·團體中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團體(이하 “公職有關團體”라 한다)의 任員
  - 가. 政府投資機關 및 政府의 出捐·補助를 받는 機關·團體 기타 政府業務를 委託받아 수행하는 機關·團體
  - 나. 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社·地方公園 및 地方自治團體의 出捐·補助를 받는 機關·團體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業務를 委託받아 수행하는 機關·團體
  - 다. 任員의 選任에 있어서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承認 등을 要하거나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員을 選任하는 機關·團體
11. 기타 國會規則·大法院規則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정분야의 公務員과 公職有關團體의 職員

②削除 <93·6·11>

**第4條 (登録對象財產)** ①登録義務者가 登錄할 財產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의 財產(所有名義에 불구하고 사실상 所有하는 財產, 非營利法人에의 出捐財產과 外國에 있는 財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改正 93·6·11>

1. 本 人
2. 配偶者(사실상의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本人의 直系尊卑屬. 다만, 出嫁한 女를 제외하며, 登錄義務者が 婚姻으로 夫 또는 妻의 家에 入籍한 때에는 그 配偶者の 直系尊卑屬

②登録義務者가 登錄할 財產은 다음과 같다. <改正 93·6·11>

1. 不動產에 관한 所有權·地上權 및 傳賣權
2. 鑄業權·漁業權 기타 不動產에 관한 規定이 準用되는 權利
3. 다음 각목의 動產·有價證券·債權·債務 및 無體財產權
  - 가. 所有者別 合計額 1千萬원이상의 現金(手票를 포함한다)
  - 나. 所有者別 合計額 1千萬원이상의 預金
  - 다. 所有者別 合計額 1千萬원이상의 株式·國債·公債·會社債等 有價證券

- 라. 所有者別 合計額 1千萬원이상의 債權
- 마. 所有者別 合計額 1千萬원이상의 債務
- 바. 所有者別 合計額 500萬원이상의 金 및 白金(金製品 및 白金製品을 포함한다)
- 사. 品目當 500萬원이상의 寶石類
- 아. 品目當 500萬원이상의 骨董品 및 藝術品
- 자. 券當 500萬원이상의 會員券
- 차. 所有者別 年間 1千萬원이상의 所得이 있는 無體財產權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할 財產의 종류별 價額의 算定方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改正 93·6·11>

1. 土地는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公示地價
2. 아파트·연립주택등 共同住宅은 所得稅法에 의한 基準時價
3. 第2號의 共同住宅을 제외한 住宅·商街·빌딩·오피스텔 기타 不動產은 估地에 대하여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公示地價로 算定한 價額과 建物에 대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告示하는 公正價額중 最高價額(取得價額이 있는 경우에는 取得價額을 併記한다)으로 算定한 價額의 合計額
4. 不動產에 관한 規定이 準用되는 權利는 종류·數量·내용등 明細(取得價額이 있는 경우에는 取得價額을 포함한다)
5. 現金·預金·債權 및 債務는 그 금액
6. 國債·公債·會社債等 有價證券은 額面價額
7. 株式中 上場株式은 財產登錄基準日의 證券去來所 最終價格(證券去來所가 財產登錄基準日이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最終價格), 非上場株式은 額面價額
8. 合名會社·合資會社 및 有限會社의 出資持分은 그 持分比率과 最近事業年度의 그 會社 年間賣出額
9. 金 및 白金(金製品 및 白金製品을 포함한다)은 그 종류·합량과 중량
10. 寶石類는 종류·크기·色相등 明細
11. 骨董品 및 藝術品은 종류·크기·作家 및 製作年代등 作品의 明細
12. 會員券은 取得價額. 다만, 끌프會員券은 所得稅法에 의한 基準時價로 한다.

④第3項에서 規定한 것외에 登錄할 財產의 價額 算定方法과 표시방법 기타 登

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3·6·11>

⑤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財產에 대하여 所有者別로 그 財產의 取得日字 · 取得經緯 · 所得源 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新設 93·6·11>

⑥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對象財產중 非營利法人에의 出捐財產은 다른 登錄對象財產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法人에 있어서의 登錄義務者の 職位를 명시하여야 한다. <新設 93·6·11>

**第 5 條** (財產의 登錄機關과 登錄時期등) ①公職者는 登錄義務者가 된 날부터 1月 이내에 登錄義務者로 된 날 現在의 財產을 다음 機關(이하 “登錄機關”이라 한다)에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轉補 · 降任 또는 退職등에 의하여 登錄義務를 免한 者가 3年(退職의 경우에는 1年)이내에 다시 登錄義務者로 된 경우에는 轉補 · 降任 또는 退職등을 한 날 이후 또는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財產變動事項申告 이후의 變動事項에 대한 申告만으로 登錄에 갈을 할 수 있다. <改正 88·8·5, 91·11·30, 93·6·11>

1. 國會議員 기타 國會所屬公務員은 國會事務處
2. 法官 기타 法院所屬公務員은 法院行政處
3. 憲法裁判所長 · 憲法裁判所裁判官 및 憲法裁判所所屬公務員은 憲法裁判所事務處
4. 中央選舉管理委員會 및 各級選舉管理委員會所屬公務員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處
5. 政府의 院 · 部 · 處 · 廳所屬公務員은 당해 院 · 部 · 處 · 廳
6. 監查院所屬公務員은 監查院事務處
7. 國家安全企劃部所屬公務員은 國家安全企劃部
8. 地方自治團體所屬公務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
9. 地方議會議員과 地方議會所屬公務員은 당해 地方議會
10. 서울特別市 · 直轄市 · 道教育廳所屬公務員은 서울特別市 · 直轄市 · 道教育廳
11. 서울特別市 · 直轄市 · 道教育委員會의 教育委員은 당해 教育委員會
12. 公職有關團體의 任 · 職員은 당해 公職有關團體를 監督하는 院 · 部 · 處 · 廳. 다만, 서울特別市 · 直轄市 · 道의 監督을 받는 公職有關團體의 任 · 職員의 경우에는 서울特別市 · 直轄市 · 道로 한다.
13. 第 1 號 내지 第12號의 登錄義務者, 第 5 號 내지 第 7 號 및 第12號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政府의 院·部·處·廳所屬公務員과 監査院·國家安全企劃部所屬公務員 및 公職有關團體의 任員으로서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產登錄事項을 公開하는 公職者는 總務處

②第1項 但書의 경우에 登錄機關이 종전의 登錄機關과 相異한 때에는 종전의 登錄機關의 長은 轉補등에 의하여 登錄義務를 免한 者가 다시 登錄義務者로 된 날로부터 1月이내에 當該人의 財產登錄에 관한 書類를 새로운 登錄機關의 長에게 移管하여야 한다. 登錄義務者가 轉補등에 의하여 登錄義務를 免함이 없이 登錄機關이 變更된 때에도 또한 같다.

**第6條 (變動事項申告)** ①登錄義務者は 每年 1月 1일부터 12月 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財產상의 變動事項을 다음 해 1月 중 登錄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登錄후 또는 第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申告후 최초의 變動事項 申告에 있어서는 登錄義務者로 된 날부터 그 해의 12月 31일까지 사이의 變動事項을 登錄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3·6·11>

②登錄義務者가 退職한 때에는 退職후 1月이내에 그 해의 1月 1일(1月 1일 이후에 登錄義務者로 된 경우에는 登錄義務者로 된 날)부터 退職日까지 사이에 발생한 財產상의 变動事項을 退職당시의 登錄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退職후 1月이내에 다시 登錄義務者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3·6·11>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는 경우에는 貸賃契約書·領收證 등(寫本을 포함한다) 그 增減原因등을 薦明할 수 있는 資料를 첨부하거나 그 事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改正 93·6·11>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할 財產상의 變動事項의 병위와 내용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3·6·11>

**第7條 (登錄期間의 延長)** 登錄機關의 長은 登錄義務者(第6條第2項의 退職公職者를 포함한다. 이하 第8條·第10條·第12條·第13條 및 第21條에서 같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財產登錄(申告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期間의 延長을 申請한 경우에 그 事由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財產의 全部 또는一部에 대한 登錄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이 경우 登錄義務者는 延長된 期間이내에 登錄을 하여야 한다. <改正 93·6·11>

**第8條 (登錄事項의 審查)** ①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職告倫理委員會는 登錄된 사항을 審查하여야 한다.

②公職者倫理委員會는 登錄義務者가 登錄財產의 일부를 過失로 漏落하거나 價額合算등에 誤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登錄義務者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財產登錄書類의 補完을 명할 수 있다.

③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查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登錄義務者에게 資料의 제출요구 또는 書面質疑를 하거나 사실확인을 위한 調査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公職者倫理委員會는 登錄義務者에게 解明 및 疏明資料提出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公職者倫理委員會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公職有關團體 기타 公共機關 또는 金融機關의 長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查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資料提出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機關·團體의 長은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보고나 資料提出등을 거부할 수 없다.

⑤公職者倫理委員會는 登錄義務者와 그 配偶者·直系尊卑屬 기타 財產登錄事項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陳述을 받을 수 있다.

⑥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查結果虛偽登錄의 嫌疑가 있다고 의심되는 登錄義務者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法務部長官(單人 또는 軍務員의 경우에는 國防部長官)에게 審查를 의뢰하여야 한다.

⑦法務部長官 또는 國防部長官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依頼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檢事 또는 檢察官으로 하여금 調査를 실시하게 하고 그 調査結果를 公職者倫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第7項의 規定에 의한 檢事 또는 檢察官의 調査에는 刑事訴訟에 관한 法令(軍事法院法을 포함한다)중 搜查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다만, 人身拘束에 관한 規定은 그리하지 아니하다.

⑨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事項 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變動申告事項을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한 후 3月이내에 財產公開對象公職者 全員에 대한 審查를 완료하여야 한다.

⑩公職者倫理委員會는 필요한 경우 財產公開對象者가 아닌 登錄義務者的 登錄事項에 대한 審查를 그 登錄機關의 長 기타 關係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機關의 長은 審查結果를 管轄公職者倫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⑪第2項 내지 第8項의 規定은 第10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 6 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依頼을 하고자 할 때에는 管轄公職者倫理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全文改正 93·6·11)

**第 8 條의 2 (審査結果의 치리)** ①第 9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 8 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事項의 審査結果 第 4 條에 規定하는 登錄對象財產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號의 1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1. 警告 及 是正措置
  2.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賦課
  3. 日刊新聞 廣告欄을 통한 虛偽登錄事實의 公告
  4. 解任 또는 懲戒(罷免을 포함한다) 議決要請
- ②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 1 項 각號의 措置를 第 3 條의 措置와 병용하여 부수하여併科할 수 있다.

(本條新設 93·6·11)

**第 9 條 (公職者倫理委員會)** ①다음 각號의 事項을 審査·決定하기 위하여 國會·大法院·憲法裁判所·中央選舉管理委員會·政府·地方自治團體·市·郡·特別市·直轄市·道教育廳에 각각 公職者倫理委員會를 두다. (改正 91·11·30, 93·6·11)

1. 第10條第 1 項에 規定하는 財產公開對象公職者에 대한 登錄事項의 審査의 그 결과의 치리
2. 第 8 條第 11 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승인
3. 第17條第 1 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承認
4. 기타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公職者倫理委員會의 權限으로 정한 사항

②각 公職者倫理委員會의 管轄은 다음과 같다. (改正 91·11·30, 93·6·11)

1. 國會公職者倫理委員會는 國會議員·기타 國會所屬公務員과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事項
2. 大法院公職者倫理委員會는 法官·기타 法院所屬公務員과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事項
3. 憲法裁判所公職者倫理委員會는 憲法裁判所裁判官·기타 憲法裁判所所屬公務員과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事項
4. 中央選舉管理委員會公職者倫理委員會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 및 各級選舉管理

委員會所屬公務員과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사항

5. 서울特別市·直轄市·道公職者倫理委員會는 서울特別市·直轄市·道所屬公務員, 管轄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 서울特別市·直轄市·道議會議員 및 議會所屬公務員과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사항
6. 市·郡·區(自治區인 地에 한한다. 이하 같다)公職者倫理委員會는 市·郡·區所屬公務員, 市·郡·區議會議員 및 議會所屬公務員과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사항
7. 서울特別市·直轄市·道教育廳公職者倫理委員會는 서울特別市·直轄市·道教育廳所屬公務員 및 教育委員과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사항
8. 政府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號 以자 第7號와의 公職者와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사항

③公職者倫理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 각 1人을 포함한 9人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을 포함한 5人는 法官·教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중에서 選任하여야 한다. 다만, 市·郡·區公職者倫理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 각 1人을 포함한 5人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을 포함한 3人은 法官·教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중에서 選任하여야 한다. (改正 93·6·11)

④公職者倫理委員會의 委員의 任期·選任 및 審查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정한다. (新設 93·6·11)

1. 國會公職者倫理委員會는 國會規則
  2. 大法院公職者倫理委員會는 大法院規則
  3. 憲法裁判所公職者倫理委員會는 憲法裁判所規則
  4. 中央選舉管理委員會公職者倫理委員會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
  5. 政府公職者倫理委員會는 大統領令
  6. 서울特別市·直轄市·道公職者倫理委員會 및 市·郡·區公職者倫理委員會와 서울特別市·直轄市·道教育廳公職者倫理委員會는 各地 地方自治團體의 條例
- ⑤公職者倫理委員會는 이 法과 第4項各號에 規定된 規則·大統領令 또는 條例의 本위안에서 그 운영에 관한 規程을 制定할 수 있다. (新設 93·6·11)

第10條 (登錄財產의 公開) ①公職者倫理委員會는 管轄登錄義務者는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公職者 本人과 配偶者 및 直系尊卑屬의 財產에 관한 登錄事項과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变動사항 申告內容을 登錄 또는 申告期間 만료후 1月이내

에 官報 또는 公報에 게재하여 公開하여야 한다. <改正 93·6·11>

1. 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國會議員·國家安全企劃部의 部長 및 次長 등  
國家의 政務職公務員
2.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地方議會議員
3. 1級인 一般職 國家 및 地方公務員과 이에 상당하는 報酬를 받는 別定職公務員
4. 特1級·特2級 및 1級인 外務公務員과 國家安全企劃部의 企劃調整室長
5. 高等法院部長判事級이상의 法官과 檢事長級이상의 檢事 및 次長檢事를 두는 支廳의 長인 檢事
6. 中將이상의 將官級 將校
7. 教育公務員중 總長·副總長·學長(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 및 專門大學長과 大學에 준하는 전종學校의 長, 서울特別市·直轄市·道의 教育監 및 教育委員
8. 治安監이상의 警察公務員 및 서울特別市·直轄市·道의 地方警察廳長
9. 地方國稅廳長 및 2級 또는 3級 公務員인 稅關長
10. 政府投資機關의 長·副機關長 및 常任監事, 韓國銀行의 總裁·副總裁 및 監事, 銀行監督院長, 農業協同組合中央會·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畜產業協同組合中央會의 會長·常任監事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職有關團體의 任員
11.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의 公務員
12. 第1號 내지 第11號의 職에서 退職한 者(第6條第2項의 경우에 한한다)  
② 누구든지 第1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公職者倫理委員會 或는 登錄機關의 長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登錄義務者의 財產에 관한 登錄事項을 閱覽·複寫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3·6·11>  
③ 公職者倫理委員會 또는 登錄機關의 長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할 수 없다. <改正 93·6·11>
1. 登錄義務者에 대한 犯罪搜查 또는 非違調查나 이에 관련된 裁判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國會議員이 國會法 第128條第1項, 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法律 第10條第1項,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政監査·調查등의 資料를 요구하거나 議政活動으로서 特定公職者の 구체적 非違事件관련여부

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財產登錄事項의 全體細目을 외부에  
公開할 수 없다.

3.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또는 公職有關團體의 長이 所屬公職者の 非遺事件관  
련여부를 判斷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登錄義務者 또는 登錄義務者이던 者가 本人의 登錄事項에 대하여 閱覽 또는  
複寫를 요구하는 경우

④削除 <93·6·11>

**第10條의2 (公職選舉候補者등의 財產公開)** ①大統領·國會議員·地方自治團體의  
長·地方議會議員 選舉의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가 候補者登錄을 하는 때에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對象財產에 관한 申告書를 管轄選舉管理委員會에 제  
출하고, 管轄選舉管理委員會는 候補者登錄公告시에 候補者的 財產申告事項을 公  
開하여야 한다.

②大法院長·憲法裁判所의 長·國務總理·監察院長·大法官·國會事務總長등 그  
任命에 國會의 同意를 요하는 公職者の 任命同意案 또는 憲法裁判所裁判官·中  
央選舉管理委員會委員등 國會에서 選出하는 公職者の 選出案을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公職候補者에 대하여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對象財產에 관한 申告書를  
國會에 제출하고, 國會議長은 자체없이 그 公職候補者の 財產申告事項을 公開하  
어야 한다.

③中央選舉管理委員會公職者倫理委員會와 國會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財產申告事項을 審査하여 그 審査結果를 公開할 수 있다.

④第3項의 審査에는 第8條第2項 대지 第5項의 規定을準用한다.

⑤第1項 및 第2項의 申告書의 書式·公開方法 기타 제2항 사항은 國會規則  
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3·6·11)

**第11條 (轉補된 者등의 財產申告)** ①登錄義務者가 公務員 또는 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의 身分을 保有하면서(退職후 1月이내에 다시 公務員 또는 公職有關團體  
의 任職員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轉補등에 의하여 登錄義務를 免한 때에는  
轉補등이 된 날로부터 1月이내에 그해의 1月 1일(1月 1일 이후에 登錄義務者로  
된 경우에는 登錄義務者로 된 날)이후 轉補등이 된 날까지의 財產變動事項을 종  
지의 登錄機關에 申告하여야 하며, 그후 2년간 每年轉補등의 事由가 생긴 月에

그전 1年間의 財產變動事項을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와 그 申告事項의 管理에 관하여는 第6條 내지 第8條와 第10條 및 第12條 내지 第1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2條 (誠實登錄義務等)** ①登錄義務者는 第4條에서 規定하는 登錄對象財產과 그 價額·取得日字·取得經緯·所得源등을 財產登錄書類에 차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3·6·11>

②登錄義務者는 公職者倫理委員會등의 登錄事項에 대한 審査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改正 93·6·11>

③第4條第1項第2號 또는 第3號의 者는 登錄義務者の 財產登錄이나 公職者倫理委員會등의 登錄事項의 審査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改正 93·6·11>

④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4條第1項第3號의 者중 被扶養者가 아닌 者는 자신의 財產登錄事項의 告知를 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登錄義務者は 財產登錄書類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改正 93·6·11>

**第13條 (財產登錄事項의 目的의 利用禁止等)** 登錄義務者は 虛偽登錄 기타 이 法에 정한 事由외에는 登錄된 事項을 이유로 不利益한 處遇나 嘘分을 벌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財產登錄事項을 이 法에 정한 외의 目的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3·6·11>

**第14條 (祕密嚴守)** 財產登錄業務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者 또는 그밖의 者로서 職務상 財產登錄事項을 알게 된 者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4條의2 (職務상 祕密을 이용한 財物取得의 금지)** 登錄義務者は 그 職務상 知得한 祕密을 이용하여 財物 또는 財產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本條新設 93·6·11)

### 第3章 膳物申告

**第15條 (外國政府등으로부터의 膳物受領申告)** ①公務員(地方議會議員 및 教育委員을 포함한다. 이하 第22條第1項 및 第23條第1項에서 같다) 또는 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이 外國 또는 그 職務와 관련하여 外國人(外國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膳物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所屬機關·團體의 長에게 申告하고 당해 膳物을 引渡하여야 한다. 이들의 家族이 外國 또는 당해 公務員이

나 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의 職務와 관련하여 外國人으로부터 贈物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3·6·1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할 贈物의 價額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 (贈物의 國庫歸屬등) ①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贈物은 申告즉시 國庫에 归屬된다.

②申告된 贈物의 管理·維持등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4章 退職公職者의 就業制限

第17條 (退職公職者의 有關私企業體에의 就業制限)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職級 또는 職務分野에 종사하였던 公務員과 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은 退職日로부터 2年間 退職전 2年이내에 담당하였던 業務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一定規模이상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私企業體(이하 “營利私企業體”라 한다)에 就業할 수 없다. 다만, 管轄公職者倫理委員會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경우 退職公職者の 擔當業務와 營利私企業體사이의 밀접한 관련상의 범위와 營利私企業體의 規模는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1·11·30, 93·6·11>

第18條 (就業承認申請) 第17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就業承認을 얻고자 하는 退職公職者は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되었던 機關의 長을 거쳐 管轄公職者倫理委員會에 就業承認申請을 하여야 한다. <改正 91·11·30, 93·6·11>

第19條 (就業者의 解任要求등) ①公職者倫理委員會委員長과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또는 公職有關團體의 長은 당해 機關·團體에 在職하였던 者(公職者倫理委員會委員長의 경우에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就業이 제한된 者)로서 第17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就業한 者가 있는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國會에 있어서는 國會事務總長, 法院에 있어서는 法院行政處長, 憲法裁判所에 있어서는 憲法裁判所事務處長,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있어서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이하 같다)에게 當該人에 대한 就業解除措置의 강구를 要請하여야 하며, 要請을 받은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當該人이 就業하고 있는 營利私企業體의 長에게 그의 解任을 要求하여야 한다. <改正 91·11·30, 93·6·1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任要求를 받은 營利私企業體의 長은 지체없이 이에

용하여야 한다.

## 第5章 補 則

**第20條 (企劃·總括機關)** 總務處長官은 이 法에 의한 財產登錄 및 公開·贍物申告 및 退職公職者의 就業制限에 관한 企劃·總括業務를 管掌한다. <改正 93·6·11>

**第20條의2 (國會에의 보고)** ① 國會公職者倫理委員會·大法院公職者倫理委員會·憲法裁判所公職者倫理委員會·中央選舉管理委員會公職者倫理委員會·政府公職者倫理委員會는 매년 定期國會에 前年度의 財產登錄·贍物申告 및 退職公職者의 就業制限에 관한 實態와 監督 기타 活動에 관한 年次報告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年次報告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3·6·11)

**第21條 (委任規定)**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大統領令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91·11·30, 93·6·11>

## 第6章 懲戒 및 罰則

**第22條 (懲戒 등)** 公職者倫理委員會는 公務員 또는 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사유로 하여 解任 또는 懲戒議決을 요구할 수 있다.

1.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財產登錄을 하지 아니한 때
2. 第6條第1項·第3項 및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變動事項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疏明資料의 첨부등을 하지 아니한 때
3. 第10條第2項(第11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없이 登錄事項을 閲覽·複寫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
4.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虛偽登錄等 불성실하게 財產登錄을 한 때
5.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公職者倫理委員會등의 登錄事項의 審查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第13條 後段(第11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財產登錄事項을 이 法에 정한 외의 目的으로 이용한 때
7. 第14條(第11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財

產登録事項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때

8. 第1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外國 또는 外國人으로부터 받은 賦物을 申告 또는 引渡하지 아니한 때

(全文改正 93·6·11)

**第23條** (職務상 祕密을 이용한 財物取得의 罪) ①公務員 · 政府投資機關(再投資機關을 포함한다) 및 地方公企業法 第5條 · 第49條 ·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直營企業 · 地方公社 및 地方公園의 任 · 職員이 그 職務상 知得한 祕密을 이용하여 財物 또는 財產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의 경우 懲役과 罰金은 이를 併科할 수 있다.

③第1項의 罪를 범한 者 또는 그 情을 아는 第3者가 第1項의 罪로 인하여 취득한 財物 또는 財產상의 이익은 이를 没收 또는 追徵한다.

(全文改正 93·6·11)

**第24條** (財產登録拒否의 罪) ①登録義務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財產登録을 거부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0條의 2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職選舉候補者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登錄對象財產에 관한 申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93·6·11)

**第25條** (虛偽資料提出등의 罪) 公職者倫理委員會(第8條第10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職者倫理委員會로부터 財產登録事項에 관한 權限을 위임받은 登錄機關의 長등을 포함한다. 이하 第26條에서 같다)로부터 第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나 資料提出등을 요구받은 각 機關 · 團體의 長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위보고나 虛偽資料를 제출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93·6·11)

**第26條** (出席拒否의 罪) 公職者倫理委員會로부터 第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93·6·11)

**第27條** (無許可 閱覽 · 複寫의 罪)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없이 財

產登錄事項을 閱覽·複寫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93·6·11)

第28條 (祕密漏泄의 罪) 第1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財產登錄業務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者 또는 그밖의 者로서 職務상 財產登錄事項을 알게 된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公開된 財產登錄事項의 財產登錄事項을 누설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93·6·11)

第29條 (就業制限違反의 罪)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退職公職者가 簡利私企業體에 就業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93·6·11)

第30條 (過怠料) ①公職者倫理委員會가 第8條의 2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賦課 對象者로 決定한 者에 대하여는 2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項의 過怠料賦課對象者에 대하여는 그 위반事實을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裁判의 管轄法院에 통보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3·6·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의 長, 地方議會議員, 教育委員, 地方自治團體의 所屬公務員 및 그 管轄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에 대한 財產登錄 및 登錄事項公開에 관한 規定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登錄義務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1月이내에 이 法 施行日 현재의 財產을 登錄機關에 登錄하여야 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의 財產公開對象 公職者에 대하여는 管轄公職者倫理委員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事項을 그 登錄期間 만료후 1月이내에 官報 또는 公報에 게재하여 公開하여야 한다.

③이 法 施行당시의 財產公開對象公職者の 登錄事項에 대하여는 管轄公職者倫理委員會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開후 3月이내에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審查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機關에 제출된 公職者財產登錄書類는 이 法 施行日에 이를 폐기한다.